

제27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6월 12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20 - 57
- 나. 제 출 자 : 이의결 의원 외 13명
- 다. 제출일자 : 2020년 6월 3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6월 10일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인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원법인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다. 관련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보조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나. 협조부서: 행정지원과

다. 입법예고(2020. 6. 5. ~ 6. 9.)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에 대해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지원법인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함)에 따라 등록된 강서구를 관할하는 법인으로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였고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지원 책무를 마련토록 한 「법」 제5조 및 제6조 취지에 부합함(안 제3조 및 제4조)

-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조 및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법」 제34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법인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 구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 범죄피해자에 지원에 대한 구 차원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조금)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6. 12. 2.>

② 국가는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위탁기관(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③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